

# 미래교육연구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2.06.13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센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부설 미래교육연구센터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미래교육연구센터(이하 센터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치)** 본 센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미래교육처 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① 센터는 평생교육 및 미래교육의 다양한 실험과 자료 축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정부, 지자체,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 프로그램 개발
2.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
3. 교사 관련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
4. 미래교육 담론 개발과 확장을 위한 포럼 등 각종 행사 기획 및 개최
5.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
6. 기타 센터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**제5조(센터장)** ①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겸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**제6조(교직원)** 본 센터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센터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(구성)** ① 본 센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미래교육처장과 미래교육연구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
**제8조(임기)**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에 심의한다.

1. 미래연구센터의 기본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연간 사업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10조(의결)**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4 장 회 계

**제11조(재정)**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1. 대학 자체 예산
2. 정부지원 사업 예산
3. 기타 지원금

**제12조(회계집행)** 본 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 및 대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다.

## 제 5 장 기 타

**제13조(기타)**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